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부과권자"라 한다)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5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	법 제30조제2항 제1호	100	150	200
나. 법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	법 제30조제2항 제2호	50	100	150

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다.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 내용 및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제2항 제3호	30	60	100
라.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 우	법 제30조제2항 제4호	50	100	150
마.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연 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 사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30조제1항	150	200	300